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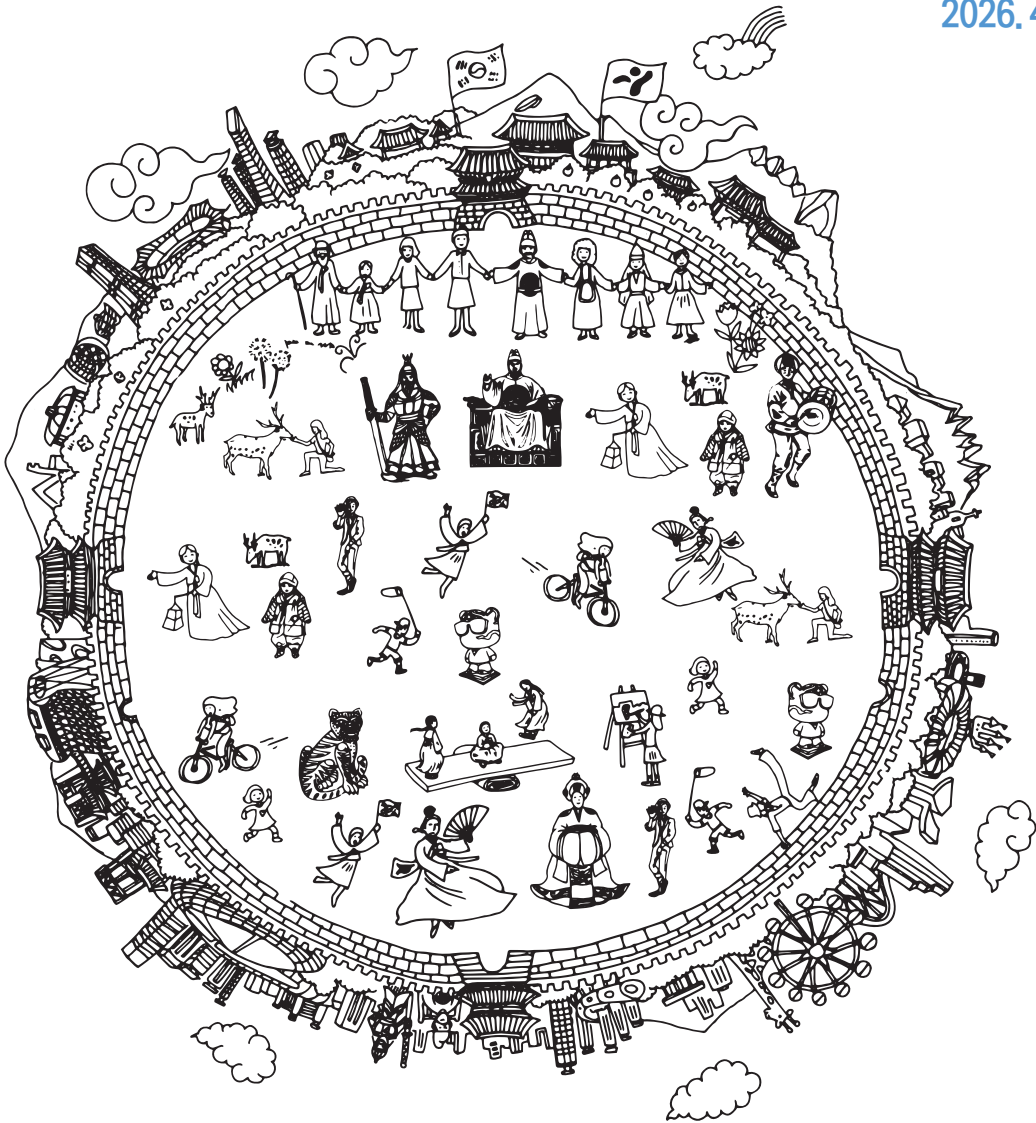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139호
2026. 4. 3.(금)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26-1150호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150호

시금고 지정계획 공고

서울시에서는 현 시금고와의 약정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서울특별시장

1. 금고의 수 : 복수금고(2개)
 - 1금고 : 일반회계·특별회계(세입세출외현금 포함)
 - 2금고 : 기금
2. 약정기간 : 2027. 1. 1. ~ 2030. 12. 31(4년)
3. 금고의 주요업무
 -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 -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
 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4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 -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, 금고별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각 금고의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
 -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
5. 신청자격
 - 1금고 :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2금고 :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(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)

※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은 1금고와 2금고 중복 신청 가능

6. 신청절차

(1) 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26. 4. 9.(목) 14:00
-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

(2) 서류열람

- 열람기간 : 2026. 4. 13.(월) ~ 2026. 4. 30.(목)
- 열람장소 :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

(3)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5. 4.(월) ~ 2026. 5. 6.(수)
 - ※ 휴일에는 신청서(제안서)를 접수하지 않으며,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 서류 제출이 불가함.
- 접수장소 :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접수는 받지않음)
- 제출서류 : 금고지정 신청서, 제안서 및 증빙서류, 부속서류, 첨부서류, 기타 서울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(제출서류 밀봉)
 - ※ 1금고와 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안서 별도 제출
- 제출부수 : 신청서 1부(원본 1부),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(원본 1부, 사본 13부), 부속 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 가 항 목	배 점
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25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20
3. 시민의 이용 편의성	18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8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7
6. 그 밖에 사항	2

※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참조

8. 심사방법

- 1금고, 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1 금고, 2금고로 선정.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.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3-나. 지방세입금 수납

처리능력, 3-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, 4. 금고업무 관리능력(특히, 전산시스템 분야), 6-가. 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예정임.

-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·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.

9. 약정 및 손해배상

-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시금고 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해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27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을 있음.

10. 비용부담

-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.

11. 기타사항

-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,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
-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.
- 제안서 접수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는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
- 확인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함께 서울시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서울시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,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☎ 2133-3228) 또는 sigeumgo@seoul.go.kr로 문의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